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 공시송달 공고

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4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

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박○윤	88.10.27.	1.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○○-3○, 2○9동 ○01호	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	· 처분제목: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· 처분원인: 하○케○○루○ 2026.2.1.~2026.2.19.(19일간) 근로 사실 미신고 · 반환명령액: 1,914,000원	1.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2. 본인 연락 두절

4. 공고기간: 2026. 6. 24. ~ 2026. 7. 8.(15일간)
5.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(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3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69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(Tel. 041-620-74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